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 - 77호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취업 및 구직이 어려운 청년의 고용촉진 및 구직활동을 시에서 일부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구직의욕과 능력을 증진시키고
- 구직청년들과 중소기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인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하여 구직활동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제2항)
-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22(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2,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별 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청년고용 확대)”를 “(청년고용 확대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의욕과 능력증진, 취업알선, 구직활동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u>청년고용 확대</u>)(생략) <신 설> <신 설>	제6조의2(<u>청년고용 확대 및 지원</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의욕과 능력증진, 취업알선, 구직활동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사회보장기본법 - 제26조(협약 및 조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③ 삭제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업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

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제6조의2(청년고용 확대 및 지원) ② 시장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의욕과 능력증진, 취업알선, 구직활동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7년은 확정예산으로 작성하고 2018년~2021년은 연도별 13%정도 상승된 추계금액으로 작성함.

나. 추계 결과

- 청년 고용사업(시 자체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계	4,511	5,234	6,110	7,016	7,892	30,763
청년고용사업	4,511	5,234	6,110	7,016	7,892	30,763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장 신왕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출	청 년 고 용 촉 진 인 턴	1,000	1,200	1,400	1,600	1,800	7,000
	청 년 상 상 플랫폼 조성	503	350	350	380	380	1,963
	인천형 구직 활 동 지 원 사 업	3,008	3,684	4,360	5,036	5,712	21,800
	소계	4,511	5,234	6,110	7,016	7,892	30,763
재원 조달		시비 100%	시비 100%	시비 100%	시비 100%	시비 100%	시비 100%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4,511	5,234	6,110	7,016	7,892	30,763
	일반회계	4,511	5,234	6,110	7,016	7,892	30,763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

○ 인천형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단위 : 명 / 백만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비 총계			21,800	3,008	3,684	4,360	5,036	5,712
시비 (10 0%)	I유형	사 업 비	18,000	2,400	3,000	3,600	4,200	4,800
		지원대상	30,000	4,000	5,000	6,000	7,000	8,000
	II유형	사 업 비	3,800	608	684	760	836	912
		지원대상	18,960	3,000	3,420	3,800	4,180	4,560

○ 청년상상플랫폼 조성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 산 액	1,963	503	350	350	380	380

○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단위 : 명 / 백만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선발인원	2,000	300	350	400	450	500
예 산 액	7,000	1,000	1,200	1,400	1,600	1,800